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가단24675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나3666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가단24675 판결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

담당변호사 정채광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민태호

변론 종결2019. 4. 26.

판결 선고2019. 5. 3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61,950,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1,799,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C은 2010. 9. 15.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피고 C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 255,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25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0. 9. 15.부터 2011. 9. 1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금액이 220,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이 2014. 12. 12.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원고,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B 및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C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무'라고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4. 2. 14. 이자 연체 등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14. 5. 21.

중소기업은행에게 223,648,455원을 대위변제하였다(한편, 신용보증기금은 1,482,730원을 회수하여 이를 구상채권 원금에 충당하였다).

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와 피고들 및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40956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6.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E)은 연대하여 원고(신용보증기금)에게 222,166,212원 및 위 금원 중 222,165,725원에 대한 2014. 5. 21.부터 2014. 6. 2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1. 6.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1. 13.부터 2017. 6. 7.까지 신용보증기금에게 합계 72,716,012원을 변제함으로써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의 잔존 원리금을 전부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1) 구상금 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원고의 변제금 상당 금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

2) 구상금 채권의 범위 원고가 자신의 출재로 신용보증기금에게 2015. 1. 13.부터 2017. 6. 7.까지 합계 72,716,012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전부 소멸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7. 1. 4. 3,000,000원, 2017. 5. 8. 5,000,000원, 2018. 2. 13. 5,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보증인의 다른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과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B이 위 2017. 1. 4.자 변제금 3,000,000원 및 2017. 5. 8.자 변제금 5,000,000원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원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7. 6. 7. 기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64,716,012원(= 72,716,012원 ~ 8,000,000원)이며,2)

2018. 2. 13. 기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원리금은 66,950,044원[= 원금 64,716,012원 + 법정이자 2,234,032원(= 64,716,012원 × 0.05 × 252일3)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위 2018. 2. 13.자 변제금 5,000,000원을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충당하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2018. 2. 13. 기준 원금 61,950,044원[= 64,716,012원 - (5,000,000원 - 2,234,032원)]만 남게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13,000,000원은 뒤에서 살펴볼 이 사건 분할상환약정에 따라 원고가 납부할 채무조정금 15,300,000원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구상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지급한 것이지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의 잔존 원리금 합계 72,716,012원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61,950,044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4.부터 이 사건 2019. 4.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4.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관련 법리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나, 연대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주채무에 대하여 출재를 분담하는 일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 즉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등 참조). 이때 구상의 범위는 출재액과 공동면책액 중 작은 쪽으로서, 출재액이 공동면책액보다 작으면 출재액의 한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재자는 면책된 날 이유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 제2항).

2) 구상금 채권의 발생 및 범위 피고 C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 피고 B 및 E이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부담비율에 관한 특약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들은 각자 균등한 비율(1/3)로 부담을 지게 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7. 1. 4. 3,000,000원, 2017. 5. 8. 5,000,000원, 2018. 2. 13. 5,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B이 위 2017. 1. 4.자 변제금 3,000,000원 및 2017. 5. 8.자 변제금 5,000,000원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원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7. 6. 7. 기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16,238,670원(= 72,716,012원 × 1/3 - 8,000,000원)이며, 2018. 2. 13. 기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원리금은 16,799,237원[= 원금 16,238,670원 + 법정이자 560,567원(= 16,238,670원 × 0.05 × 252일/365일,)]인바, 위 2018. 2. 13.자 변제금 5,000,000원을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충당하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2018. 2. 13. 기준 원금 11,799,237원[= 16,238,670원 - (5,000,000원 - 560,567원)]만 남게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13,000,000원은 뒤에서 살펴볼 이 사건 분할상환약정에 따라 원고가 납부할 채무조정금 15,300,000원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구상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지급한 것이지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의 잔존 원리금 합계 72,716,012원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보증인의 다른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과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1,799,237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4.부터 이 사건 2019. 4.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4.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항변 등의 요지

1)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제1주장) ○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 3인 중 1인인 원고는 2015. 1. 13. 신용보증기금의 채무감면제도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그 당시의 이 사건 구상금 채무원리금 중 1/3 상당인 15,300,000원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상환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런데 이후 신용보증기금이 원고의 재산을 추적하던 중 숨겨둔 재산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위 분할상환계약이 파기되었다.

○ 원고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위 분할상환계약에 따라 원고는 연대보증인이 아닌 단순 분할채무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피고들도 모두 분할상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원고의 귀책사유 즉,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숨긴 채 위 분할상환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위 분할상환계약이 파기되었고, 그 결과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의 요구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잔존 원리금 합계 72,716,012원을 전부 변제하였는바, 이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로서 피고들의 이익을 해치는 변제이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분할채무(제2주장) ○ 설령 원고의 변제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에게 72,716,012원을 변제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던 15,300,000원을 넘어 구상청구를 하는 것은 분할채무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다.

○ 피고들도 원고의 채무감면제도를 이용하여 각자 분할상환금 15,300,000원으로 정리하였고, 피고 B이 원고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2,300,000원에 불과하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13.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상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분할상환계약 제1조(채무의 승인)는 "분할상환계약일인 2015년 1월 13.일

현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총채무액이 [별지] '총채무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61,735,341원(손해금 16,108,831원 포함)임을 확인하고 분할상환계약일 이후에도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율에 따라 손해금이 발생함을 인정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채무상환)는 "제1조의 총채무액 중 15,300,000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기한의 이익 상실) 제1항은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통지 또는 최고를 받지 않더라도 이 분할상환계약이 실효되고, 제1조에서 인정한 총채무액 전부를 상환하여야 함을 인정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분할상환계약일 현재 재산을 소유 또는 취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알리지 아니하고 이 분할상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진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게 그 당시 소유하고 있던 하남시 F아파트 G호에 관한 분양권 소유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용보증기금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의 잔존 원리금 합계 72,716,012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분할상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단순 분할채무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피고들도 모두 분할상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상환계약 제6조(채무의 존속)는 "제3조의 분할상환계약금액 및 분할상환계획에 따라 약속한 채무의 분할상환이 이행완료되기 전까지는 제1조에서 인정한 채무가 본인의 채무로 계속 존속함을 인정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특약사항)는 "분할상환 약정시 원고(A) 급여채권 가압류 해제 및 상환완료시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 규제 해제"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분할상환계약이 실효됨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신용보증기금에게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의 원리금 합계 72,716,012원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변제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원고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이 사건 분할상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자 분할채무로 변경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들 중 1인인 원고가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상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은 주채무자인 피고 C이나 다른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이영은

1) 주채무자인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으로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2) 한편,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에게 2015. 1. 13.부터 2017. 6. 7.까지 합계 72,716,012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017. 6. 7. 전에 변제한 금원에 대한 각 변제일로부터 2017. 6. 6.까지의 법정이자는 구하고 있지 않다.

3) 2017. 6. 7.부터 2018. 2. 13.까지의 일수